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11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 박홍배 • 이기헌 • 이상식

민병덕 · 김태년 · 김현정

김남근 • 강득구 • 강훈식

한준호 • 이수진 • 위성락

김영진 • 이광희 • 서영석

서영교・송재봉・허 영

정태호 · 김성회 · 전종덕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노동시간(1,874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시간 근로는 과로사, 건강권 침해, 노동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 이 같은 현상은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내수 경제침체와 저출생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됨. 노동자들의 과도한 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과가정의 양립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장시간 근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잡아야 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업 또한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이루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10조제2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생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을 심의한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u> <신 설></u>	9.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일ㆍ가		
	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단		
	축에 관한 사항		
<u>9.·10.</u> (생 략)	<u>10.</u> ・ <u>11.</u> (현행 제9호 및 제10		
	호와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